

報 道 參 考 資 料

※ 04.12.24일 07:30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마련

□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04.12.24일(금)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음

○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안건을 별첨으로 첨부함

※ 별첨: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안건

資料 生産課 : 財政經濟部 産業經濟課 TEL : 2110-2309

(과장 유광열, 사무관 유창연)

金融政策課 TEL : 2110-2409

(과장 김광수, 사무관 권대영)

財政經濟部 政策調整局長 金融政策局長
公 報 官

<참고> M&A 현황

□ M&A 개념

- 기업의 합병, 영업 이전, 회사자산 또는 주식 인수·교환 등을 통해 부실기업의 퇴출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방법

□ 기업간 M&A 시장동향

- 세계 : '03년중 13,330억불 규모 (한국 32.8조원)

	'99	'00	'01	'02	'03	'04 상반기
세계전체(억불)	32,790	34,100	17,440	12,070	13,330	8,725
미국(억불)	14,040	18,300	7,955	-	-	4,898
한국(조원)	-	-	13.5	15.3	32.8	91.9

※출처 : Thomson Financial Securities Data, 공정거래위 LG주간경제(4.28), 매경(7.3) 재인용

- 벤처기업요건 강화 등 벤처건전화대책 시행('02.2)과 IT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벤처기업의 합병·부도·휴폐업 증가

* 퇴출 벤처기업수(개) : (00)122→(01)310→(02)648→(03)169→(04.10)110

* 벤처기업 합병·부도(개) : (00)78→(01)245→(02)284→(03)149→(04.10)97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중소·벤처기업 부문으로 확대 되면서 투자 중심의 M&A가 점차 증가

* '04년 상반기 코스닥등록법인의 M&A는 28건으로 전년동기 21건 대비 7건(33.3%) 증가

* 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 매각 추진('04년 약 50여개) 등

- M&A 전문기관을 통해 매각작업을 추진중인 중소·벤처 기업도 200여개 이상 추정 (거래규모 약 8,000억원 이상)

* M&A희망기업(건) : M&A협회(127), 기술거래소(20), 기술신보(70) 등

- 코스닥기업도 등록·퇴출기준 강화 등으로 경영악화기업 상당수가 최대주주 변경 또는 M&A 대기중

* 코스닥 등록취소 기업개수 :

(00) 33 → (01) 9 → (02) 25 → (03) 26→ (04.11) 35

<참고> 그간의 M&A 활성화 노력

□ 벤처기업 M&A 특례도입 : 벤처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04.1.4)

- M&A 대상으로 벤처기업 외에 다른 기업 주요주주를 포함
- 다른 기업의 구주(舊株)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신주(新株)를 인수하는 방식의 주식교환 제도 및 기업가치 공인평가제도 도입
 - 현물출자주식을 공인평가기관이 평가시 **법원심사생략** 특례
 - * 공인평가기관 : 기술거래소, 기술신보,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
 -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총주식의 50% 이하일** 경우 주총 절차를 이사회로 갈음 (소규모 주식교환의 특례)
- **합병 및 영업양도·수도 절차 간소화**
 -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절차를 주총이전으로 단일화
 - 벤처기업의 **소규모 영업**(양수기업 순자산액의 10% 이내)을 양수할 경우, 영업양수기업의 주총의결을 이사회로 갈음
 - ※ '04. 4. 21부터 법률 시행

□ 벤처기업 M&A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3.12)

- 주식교환시 취득주식의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벤처기업과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기업 M&A시 신용보증기관의 채무조정을 허용('04.10)

- 신용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의 원금감면 및 시장매각을 허용
 - * 신기보의 업무방법서 변경

□ M&A 전용펀드 조성 등 활성화기반 마련

- 구조조정전문회사 M&A펀드(2개) : 490억원 (재정: 233억원)
- IT 벤처 M&A펀드(2개) : 1,385억원 (재정 : 600억원)

<참고>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증대를 위해 일부 중소기업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제한의 예외로 인정*

* 중소·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제한 예외

· 대상 중소기업 : ①부품·소재 생산 기업 ②벤처기업

· 예외인정 요건 :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30% 미만을 취득·소유

- 그러나 실제 대기업의 중소기업 출자는 매우 미흡하고 그 규모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

○ 대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출자금액은 '04.4월 현재 790억원으로 전체 예외인정 금액의 1.8%에 불과

* 중소기업 출자액(단위: 10억원) : ('02)204 → ('03)137 → ('04)79

나. 개선 방안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확대를 위해 출자제한의 예외인정요건을 완화

○ 대기업이 중소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출자제한의 예외로 인정

* 구체적인 지분율한도는 추후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시 확정

- 다만, 지분을 상향으로 인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 중소기업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 대기업 출자가 중소기업을 지배할 목적의 아닌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

<참고> 벤처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제지원 내용

- ☐ 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해서도 창투조합 출자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

*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회사가 결성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 외에 일반 중소기업에도 투자('99~'04년, 9개 펀드, 약 3,300억원 조성)

- 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등

- ☐ 창투조합을 운영하는 창투사가 창업·벤처기업 투자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 ☐ 사업손실준비금제도의 제도입을 통하여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

- ☐ 보유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코스닥시장의 대주주 범위 변경

* (현행) 발행주식 총수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소유 → (변경) 발행주식 총수 5%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소유

- ☐ 호가중개시스템의 거래대상 중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

- ☐ 주식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익실현시 까지 이연시켜주는 대상기업 범위를 확대

*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과 주식교환시에만 이연을 허용 → (개선) 공개기업과의 주식교환까지 확대

<참고>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책방향

- 금번대책은 시장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벤처캐피탈을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시키도록 유도하는데 초점
 - 정부는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형성을 촉진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는데 주력
- 창투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우수한 벤처캐피탈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창투사는 종전에는 자본금에 의해 투자를 이루어졌으나, 조합(펀드) 중심으로 투자가 정착됨에 따라 회사 중심의 벤처캐피탈정책에서 벤처캐피탈리스트 중심으로 전환 필요
 - * 창투사 자본금 투자: ('00) 18,677억원→('04.10) 9,577억원
 - * 조합 계정 투자 : ('00) 10,014억원→('04.10) 16,977억원
 - 다만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와 아울러 창투사에 대한 상시 평가시스템, 투자활동 공시제도 등의 상시점검시스템을 구축·가동하여 부실 창투사를 과감하게 퇴출시킬 계획
- 현재는 정부의 Seed Money 공급이 창투조합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의해 펀드가 구성되고, 투자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
 - 우선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민간 자금과 매칭으로 “창투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하는 한편,
 - 중장기적으로 민간 출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등을 통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성과를 제고시켜 벤처캐피탈의 산업적인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04. 12. 24

재 정 경 제 부	교육인적자원부
산 업 자 원 부	정 보 통 신 부
공 정 거 래 위	금 융 감 독 위
중 소 기 업 청	

목 차

1.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의 개요	1
1.1 벤처기업의 현황 및 애로요인	1
1.2 그간 벤처정책에 대한 평가	2
1.3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의 방향	4
2. 성장단계별 벤처기업 활성화방안	6
2.1 창업단계	6
(1) 벤처캐피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2) 벤처캐피탈의 역량 제고	
(3) 정직한 실패에 대한 패자부활 프로그램 도입	
2.2 성장단계	10
(1) 벤처기업관련 정보인프라 구축 및 자금지원 강화	
(2) 산학협력을 통한 벤처클러스터 형성	
(3) 신기술제품 및 SW의 수요기반 확대	
2.3 성숙·구조조정단계	14
(1) 코스닥시장의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화	
(2) 코스닥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수요기반 확충	
(3)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조기 퇴출	
(4)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개편	
(5) 벤처기업의 M&A 활성화	
(6)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회수 지원	

1.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의 개요

1.1 벤처기업의 현황 및 애로요인

◇ '01년 이후 부진을 면하지 못했던 벤처업계는 최근 선도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나,

- 벤처거품 붕괴와 과거비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투자자·시장의 신뢰가 단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

□ 벤처기업의 수는 '0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

* 벤처기업 수(개) :

('00) 8,798 → ('01) 11,392 → ('02) 9,106 → ('03) 7,702 → ('04.11월) 7,433

- 벤처기업은 '97년 경제위기 극복에 이어 현재도 수출·고용창출 등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대도 높은 상황

* 수출실적이 있는 벤처기업의 비중이 58.5%에 이름

* 벤처기업의 고용은 44.1명으로 일반 중소기업(9.2명)보다 높은 수준

□ 벤처캐피탈은 벤처산업부진으로 투자회수가 어려워져 '00년 이후 투자조합결성 및 신규투자가 위축

*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억원) :

('00)20,075→ ('01)8,893→ ('02)6,167→ ('03)6,118→ ('04.1~11월)4,978

□ 코스닥 시장은 '00년을 정점으로 신규상장 기업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장기업의 경영실적은 개선 추세

* 신규상장 기업(개): ('00)178 → ('02)153 → ('03)71 → ('04.1~11월)40

*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04년 상반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79%로 '00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

1.2 그간 벤처정책에 대한 평가

◇ 그 동안의 벤처정책은 벤처산업을 단기간에 급속하게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 정책운용과정에서 일부 문제점 노정

□ 정부의 벤처육성시책은 벤처산업의 양적 팽창, 벤처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평가하는 벤처투자시장의 형성에 크게 기여

○ IT, NT, BT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경제를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시키는 초석 마련

○ 벤처캐피탈, 코스닥시장 등 벤처투자시장의 비약적 발전으로 용자위주의 자금공급을 투자위주로 전환

□ 정부의 직접적 개입, 시장중심의 벤처가치 평가시스템 미비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 발생

○ 정부의 직접적 지원으로 자유로운 진입·퇴출이 저해

- 벤처확인제도*에 의한 벤처인증기업에 대해 정책적 혜택을 집중시키는 것은 시장에 의한 벤처기업의 가치 평가라는 시장 메카니즘의 작동을 저해

* 벤처특별법에 따라 혁신능력요건, 유형별(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요건 등을 감안해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코스닥 시장의 시장관리 능력이 시장규모 확대속도에는 미치지 못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여 시장신뢰 저하

(참고) 벤처 정책의 변화 과정

- 벤처정책은 '86년 이후 태동기, '97년 이후 인프라 확충기를 통해 급성장하였으나 '02년 이후 조정국면에 진입

1997년 이전 : 벤처기업의 태동기

-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86)
 - ②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정('86)
 - ③ 코스닥시장 개설('96)
- ⇒ 법률적 기초마련 등을 통해 벤처 1세대 등장



1997~2001년 : 벤처기업 창업 촉진 및 벤처인프라 확충기

- ①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정('97)
 - ②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98)
 - ③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98)
 - ④ 창업투자조합 출자지원('99)
- ⇒ IT산업의 급성장과 맞물려 벤처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



2002년 이후 : 벤처기업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조정기

- ① 벤처기업확인제도 강화('02)
 - ② 벤처캐피탈의 투명성 제고('03)
 - ③ 코스닥시장의 퇴출 요건 강화('03)
- ⇒ 벤처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이를 통한 벤처산업의 연착륙 유도

1.3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의 방향

◇ 역동성과 多産多死, 고위험-고수익이라는 벤처기업의 본질을 잘 살릴 수 있는 토양을 조성

○ 창업·성장·구조조정이라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인프라와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4.7.7일)에서 혁신선도형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 이번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은 7.7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벤처관련 자본시장의 확충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

□ 벤처기업의 진입·퇴출이 시장원리에 의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벤처캐피탈, 코스닥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

○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벤처산업의 경우 수많은 투자자를 연결(nexus)하고 기술이나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玉石을 가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본시장이 매우 중요

○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탈산업을 육성하는 등 민간투자확대 유도

○ 투자자금의 회수와 구조조정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코스닥 시장과 M&A를 활성화할 필요

⇒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05년이 “벤처 활성화 원년”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

* 1,000여개 벤처기업 실태조사(‘04.11월) 결과를 감안하여 대책 마련

(참고) 벤처기업의 라이프 사이클과 벤처정책방향

① 창업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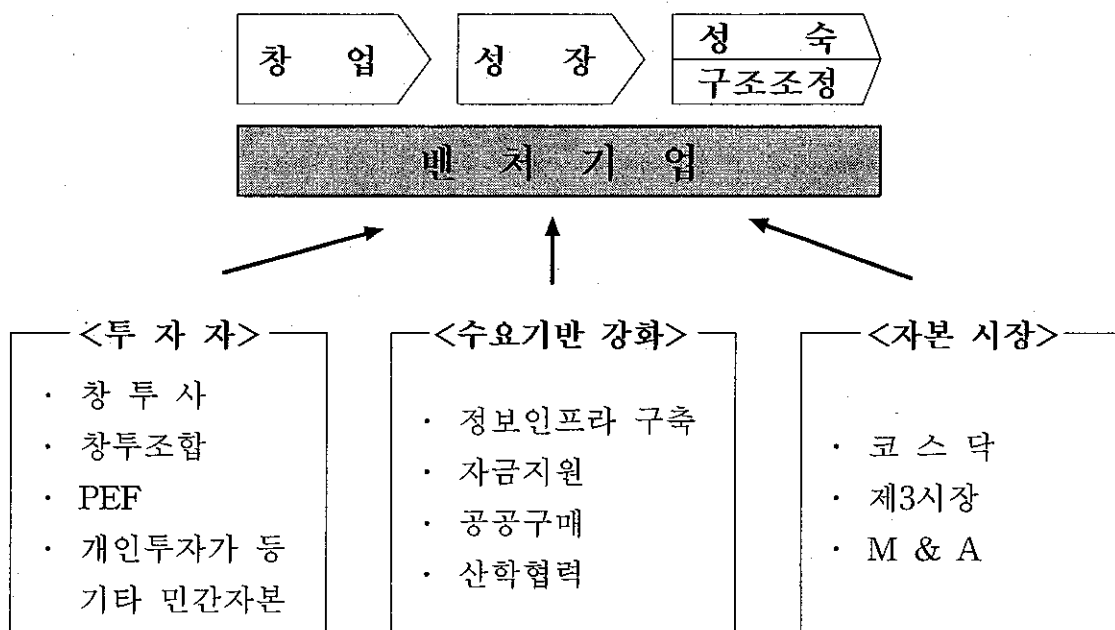
- 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창업투자회사·조합 등 벤처캐피탈의 투자역량을 강화
- 성공·실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를 체계화시키고 정직한 실패자는 재기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시스템 구축

② 성장 단계

-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산학협력, 공공구매 등 수요기반 강화조치를 병행

③ 성숙·구조조정 단계

- 코스닥시장,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촉진하고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
- 벤처기업의 M&A관련 규제도 완화



2. 성장단계별 벤처기업 활성화방안

2.1 창업단계

(1) 벤처캐피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가.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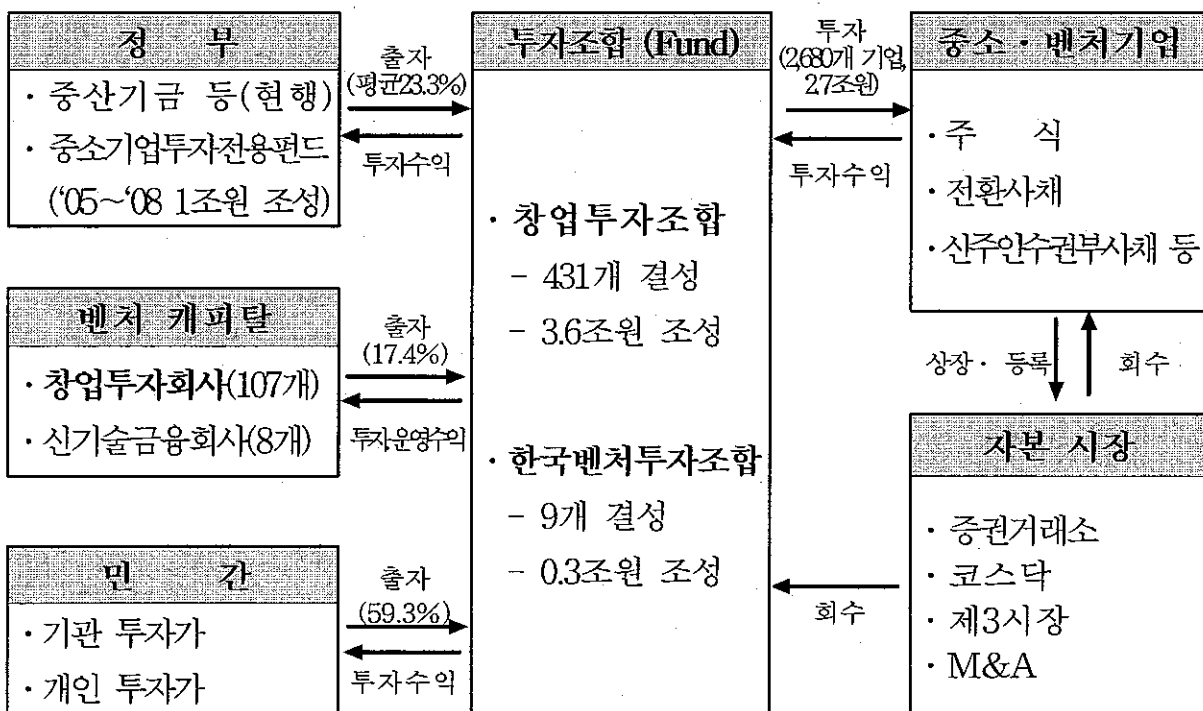
- 창투조합 결성 및 창투조합에 대한 신규투자의 감소 등 벤처캐피탈의 위축으로 벤처기업의 자금공급원 축소

	'99	'00	'01	'02	'03	'04.1~11
창투조합 결성(억원)	4,885	14,341	7,910	5,222	4,550	3,691
신규투자(억원)	9,502	20,075	8,893	6,167	6,118	4,978

- 특히, '04~'05년 만기가 도래하여 해산되는 창투조합이 많아 투자규모가 대폭 감소될 우려

* '04.10월말 현재 전체 창투조합(431개, 3조 6,133억원)중 '04~'05년 만기조합은 237개 1조 7,286억원(전체의 55.0%)

< 벤처캐피탈의 벤처기업지원체제 >



나. 개선 방안

□ 정부의 창투조합에 대한 투자 확대

- '05~'0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을 조성해 벤처창업 등에 투자('04.12.8일 벤처특별법 개정)

* 향후 4년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투자회수자금 6천억원과 정부예산 4천억원으로 조성하여 revolving이 가능하도록 운영

- 창업·지방·바이오 등 민간투자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 이 펀드를 통한 정부출자비율을 우대 적용*

* '05년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운용규정 제정시 반영

- 창투사가 투자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이 대출되는 투자연계 대출제도 도입 검토

□ 펀드조성을 통한 민간투자유치 확대

- 창업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하여 산업은행과 민간이 2천억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

□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유인 강화(조세특례제한법)

- 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게도 창투조합 출자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단, 창업·벤처기업 투자분에 한정)

*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회사가 결성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 외에 일반 중소기업에도 투자('99~'04년, 9개 펀드, 약 3,300억원 조성)

- 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고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등

(2) 벤처캐피탈의 역량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 창투사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많고 창투사의 투자활동에 대한 공정한 감시기능이 취약

나. 개선 방안

- ☐ 창투사의 설립·업무영역과 관련된 규제 완화(창업지원법)

- 창투사 설립과 관련된 납입자본금 요건(최소 100억원)과 전문인력 확보요건(최소 3인)을 완화

- 벤처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고 기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 겸업 등을 허용

- ☐ 창투사의 창투조합출자·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표준규약)

- 창투사가 창투조합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20%로 제한되어 있는 창투사의 성과보수 상한을 폐지

- 창투조합에 대한 창투사의 최소 의무출자비율(현행 5%)을 조합별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창투조합을 운영하는 창투사가 창업·벤처기업 투자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 ☐ 창투사 평가 및 퇴출요건 강화로 벤처캐피탈시장 건전성 제고

- 창투사의 재무상태, 법령준수여부, 투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창투사 평가시스템을 구축(중기청, '05년)

- 불법행위 창투사,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창투사 등에 대해 등록취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퇴출을 강화

(3) 정직한 실패에 대한 패자부활 프로그램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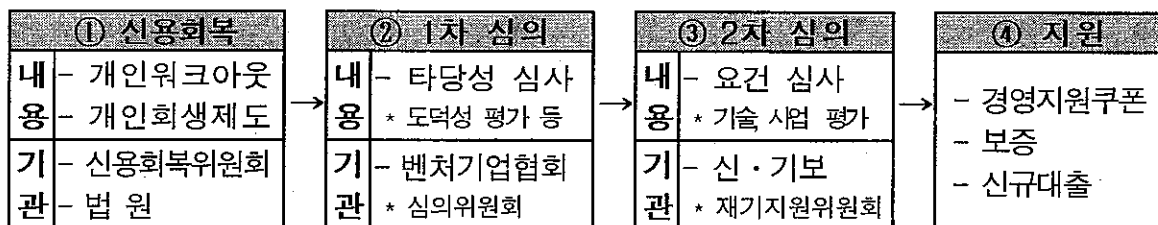
가. 현황 및 문제점

- ☐ 벤처기업은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97년 벤처 특별법 제정 이후 약 1만개 실패기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대표이사와 대주주는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이 사장

나. 개선 방안

- ☐ 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서는 재기가 가능토록 패자부활 프로그램 도입(신·기보관련 규정)
- 대상기업(인)은 벤처기업으로 하되 과거 보증경력이 없이 실패한 경우 외에 보증을 받아 실패한 경우까지 포함
- 신용회복자에 한해 벤처기업협회가 1차로 도덕성을 평가하고 보증기관이 기술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신규보증
 - 과거 보증으로 인한 구상권은 상호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행사 유예

* 다만, 과거 보증경력이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해 3년 경과시 가능



- ☐ 코스닥위원회,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기관은 기보의 벤처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성공·실패 사례를 DB화하고 공유

2.2 성장단계

(1) 벤처기업관련 정보인프라 구축 및 자금지원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 벤처기업에 대한 영업·재무 등 경영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공시하는 시스템이 없어 보증 및 투자확대가 어려움
 - 기술기업의 창업에 주로 활용되는 기술평가보증은 기보 보증잔액의 14% 수준('04.11월)
 -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채널도 다양화되지 못한 상황

나. 개선 방안

☐ 기보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정보유통을 활성화

- 벤처 기업의 영업, 재무, 기술 등 경영정보 공시를 확대해 신뢰성 있는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경영을 유도

① 정보수집 : 기보가 보증 공급시 벤처기업과 협약

* 거래중인 4,800개 벤처기업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점차 확대

② 정보공시·부가서비스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벤처기업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사례 제공
- 자가경영진단서비스 및 외부컨설팅과 연결
- M&A 및 기술거래 관련 정보 제공
- 기관투자자간 벤처기업 주식·사채(전환·신주인수권부) 거래 중개

③ 정보 가공·평가 : 중소기업전문 기업CB와 연계

□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확대 및 제도 개선

-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창업·벤처보증 전담기관*으로 하여 3년간('05~'07년)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

* 7.7대책 : 기보를 기술창업기업 전문 신용보증기관으로 특화

- 보증지원방식을 대출액 등 과거실적 심사 중심에서 미래 가치 중심의 기술평가로 전환

(단위 : 억원)

	'04년	'05년	'06년	'07년	'05~'07년
벤처기업 보증	22,200	28,000	35,000	40,000	102,500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보증)과 투자 복합상품을 통해 금융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
- 연기금, 금융기관,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공이익은 투자자와 보증기관이 공유*
- * 코스닥 상장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공유
- 지분분산(30%)과 기술력·신용도가 양호한 벤처기업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조건으로 대표자 등의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기보의 연대보증 운용규정)

□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범위 확대

* (현행)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에 30%미만을 출자할 경우 예외 인정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

- 기업은행이 2천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PEF조성
-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벤처투자에 대한 평가를 중장기로 유도하고, 감독·감사시 이를 감안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

(2) 산학협력을 통한 벤처클러스터 형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학내에 개별기업이 제한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특례는 있으나, 기업집적시설 구축은 곤란

○ 벤처특별법상 대학교원에 한하여 교내에 500㎡미만의 규모로 실험실공장 설치 가능

○ 일반기업은 학교부지 내에 타인소유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어 외부기업 유치를 통한 집적시설 설치가 곤란

☐ 대학이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창업기업에 대한 출자나 지적재산권 등 현물출자가 불가능

* 정부 각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의 신청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 수행

나. 개선 방안

☐ 대학내 기업집적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대학설립운영규정)

○ 산학협력을 위한 경우에는 대학내에 환경에 위해가 없는 도시형공장 수준의 벤처기업과 연구소의 입주를 허용

* 부지규모가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대학 내에 집적지 조성 허용

☐ 산학협력단에서 지적재산권(특허 등)을 출연하고, 민간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의 벤처기업 창업 허용 검토

○ 장기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3) 신기술제품 및 SW의 수요기반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 신기술제품의 품질·성능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뢰부족 등으로 인해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 저조

* 한전, 석유공사 등 총 19개기관을 표본조사한 결과, 총 구매액 중 신기술인증 제품의 구매비중은 0.06%에 불과

나. 개선 방안

- ☐ 벤처기업의 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요기반 확대

- '05년부터 도입예정인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운영과정에 사업자 및 품목선정시 벤처기업을 우대

* 품질, 성능, 효용 등이 유사한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와 단가 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구매

- 신기술제품의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성능보험을 도입하고 보험가입 제품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근거 마련

- ☐ 공공기관의 SW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

- GS* 인증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직접구매 활성화

* Good Software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성, 신뢰성, 호환성 등을 갖춘 SW제품에 부여하는 인증마크

- 기술개발 우선구매 대상에 추가(중기청)하고 직접구매 가능 SW조달품목 확대 및 SW품질정보 제공(정통부)

- 현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국내 SW제품의 Upgrade수요창출을 위해 일반물품에 준한 내용연수 적용

* 일반물품의 경우 조달청고시 내용연수에서 정한 사용기간 경과 후 교체 가능 (PC 4년, 승용차 5년, 팩스 5년 등)

2.3 성숙·구조조정단계

(1) 코스닥시장의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상장요건 등에 있어 차별성이 불명확하고 신시장인 코스닥의 정체성이 퇴색되어 있어 투자자의 참여가 부진하고 시장활력이 크게 저하

나. 개선 방안

- ☐ 통합거래소 출범에 맞춰 시장간 차별화를 추진
 - 거래소는 중소기업 요건을 폐지하여 “대형·우량 기업” 중심으로 육성
 - 코스닥은 중견기업 요건을 폐지하여 우량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유도하여 “중소·벤처 기업” 위주로 육성
 - 벤처기업은 수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코스닥 위원회가 기술력, 성장성 등을 판단하여 상장 가능토록 개선
- * 나스닥 등 대부분 신시장은 이익 요건이 없거나, 여타 요건과 선택 적용

< 현행 거래소·코스닥 상장요건 비교 >

		코스닥			거래소	
		일반(중소)	중견	벤처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	자 본 금	10억	-	5억	50억	30억
	자기자본	-	100억	-	100억	75억
	자산총계	-	500억	-	-	-
	매 출 액	-	-	-	최근300억 (3년평균 200억)	최근150억 (3년평균 100억) & 최근성장률 20%
안정성	자본잠식	없을것	없을것	없을것	유보율* 50%	유보율* 50%
	부채비율**	1.5배 (100%)	1.0배 (100%)	-	1.5배	1.5배
수익성	경상이익	있을것	-	있을것	영업/경상/당기순이익	영업/경상/당기순이익
	ROE***	10%	-	5%	5%(&3년 10%) or 이익 25억(&3년 50억)	10% or 이익 20억
기타		주식양도 제한여부, 주식분산 정도, 소송 및 부도 여부 등				

*(자기자본 - 자본금)/자본금×100, **동종업종 기준, ***자기자본이익률=이익/자기자본×100

(2) 코스닥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수요기반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 ☐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창구이자 벤처 캐피탈의 투자회수 시장이나 '00년 이후 부진

* '04.12.7 코스닥지수는 375.28p로 연초(451.4p)대비 16.9%하락

- ☐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 역동성·변동성이 크다는 데 시장특성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기반이 미흡

- 가격변동폭($\pm 12\%$)이 거래소($\pm 15\%$)에 비해 적어 가격 발견기능 및 주가 차별화가 제약

-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주가지수선물 상품의 활성화도 미흡

- ☐ '00년 이후 시장 과열과 일부 CEO 등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응하여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

나. 개선 방안

- ☐ 코스닥시장의 역동성 제고

* 코스닥·선물시장 업무규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시행령

- 가격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는 전일종가대비 $\pm 12\%$ 인 가격변동폭을 거래소 수준인 $\pm 15\%$ 로 확대

- 우량종목(30개)으로 구성된 STAR지수 선물을 상장(05.1/4분기)하고, BT 등 다양한 투자관련 지수를 개발

- 거래대상 유가증권을 현행 주식에서 거래소에 준하여 코스닥기업 회사채,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확대

- 코스닥 공모주의 고수익펀드 배정비율을 폐지(05.1/4)하여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기반 확충

* (현행) 우리사주 20%, 고수익 30%, 일반 20%이상, 기관 30% 미만

□ 코스닥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코스닥 상장규정)

- 최대주주 등의 상장후 매각제한(lock-up) 기간을 단축

* (현행) 2년(1년 경과시 매월 5%) → (개선) 1년(6월 경과시 매월 5%)

- 코스닥 상장 후 무상증자 제한 폐지

* (현행) 상장후 1년간 이익배당 한도 내에서만 무상증자 가능

-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의 주선기업 주식 보유의무 폐지 등

* (현행) 상장 주선 주식총수의 1% 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

□ 코스닥상장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

- 코스닥 등록법인의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소득금액의 30%)을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

- 향후 손실발생시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은 일정기간(예 : 등록 후 5년) 경과 후 순차적으로 환입

- 보유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범위 변경

* (현행) 발행주식 총수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소유 → (변경) 발행주식 총수 5%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소유

(3)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조기 퇴출

가. 현황 및 문제점

□ 코스닥 시장은 '00년 이후 시장 건전화 차원에서 퇴출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

* 관리종목 지정기업이 90개에 달하여 향후 퇴출이 증가할 전망

○ 그러나, 관리종목 등 퇴출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이 장기간 시장에 존속함에 따라 시장 건전화에 장애

* 퇴출/신규등록, '03년 : 코스닥 38%, 나스닥 745.5%

나. 개선 방안

□ 한계선상에 있는 부실기업이 신속히 퇴출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코스닥상장 규정)

○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확대하여 투자자에 대한 사전경고 기능을 강화

* (현행) 연간 결산시 50% 이상 자본잠식 →
(개선) 추가로 반기 100% 이상 자본잠식 등

○ 관리종목 지정 후 퇴출까지의 유예기간을 단축

* (현행) 자본잠식의 경우 1년 → (개선) 6월

○ 코스닥위원회가 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출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집행

*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 증권범죄로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코스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퇴출

(4)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개편

가. 현황 및 문제점

- 호가중개시스템은 '00.3월 증권업협회가 개설하였으나, 상대매매 방식에 따른 불편, 세제혜택 부재 등으로 기업 및 투자자 참여 부진

< 호가중개시스템 중개 현황 >

구분	'00	'01	'02	'03	'04.11
일평균거래량(천주)	571	849	781	254	55
일평균거래대금(억원)	6.7	3.4	2.4	0.7	0.4
지정기업수(개)	132	176	183	107	70
유상증자실적(억원)	680	921	273	300	135

나. 개선 방안

- 호가중개시스템을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 등 벤처자금의 선순환의 장으로 육성

- 현재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인 기업으로 국한되어 있는 대상기업을 “벤처기업, 정규시장 퇴출기업”으로 확대 (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업감독규정)

- 매매체결방식을 시장참여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증권거래법시행령)

* 제한적인 경쟁매매 방식 도입 등 검토

- 거래대상 중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
- 증권업협회 중심의 자율적인 감시 시스템을 도입
- 비상장 모험투자라는 취지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여 선정

(5) 벤처기업의 M&A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 M&A는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회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실패기업이 보유한 신기술·아이디어의 사장화를 방지

* 미국 벤처캐피탈의 경우 M&A를 통한 투자회수가 75% 수준

- ☐ 정부는 '04.1월 기술력, 성장성 등 벤처기업의 특성을 감안 하여 M&A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

* (예) 세부담 경감을 위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완화

- ☐ 그러나 아직 제도적인 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벤처기업의 M&A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나. 개선 방안

- ☐ 주식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익실현시 까지 이연시켜주는 대상기업 범위를 확대

- 현재는 비상장 벤처기업과 주식교환을 할 경우에만 이연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기업과의 주식교환으로 확대

* 공개벤처기업과의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제외하고 있는 벤처특별법을 우선 개정한 후 조특법 개정

- ☐ 코스닥 시장의 M&A 활성화(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 코스닥기업이 비상장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받는 심사제도를 탄력 운용하여 소규모 기업 합병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

-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주식교환(현물출자)시 법원의 검사인 선임 절차를 배제하여 신속한 M&A가 가능토록 함

*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의 검사인 선임 절차를 기배제

(6)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회수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창투조합의 만기가 '04~'05년에 집중*되어 있으나, 벤처 관련 자본시장의 침체로 투자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됨

○ 향후 창투조합을 통한 신규 투자규모가 대폭 감소될 우려

* '04.10월말 현재 전체 창투조합(431개, 3조 6,133억원)중 '04~'05년 만기조합은 237개 1조 7,286억원(전체의 55.0%)

나. 개선 방안

□ '05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창투조합의 존속기한 연장 유도

□ 세컨더리 펀드 조성, 거래정보망 구축 등 투자회수시장 조성

○ 구주거래전문펀드 및 부실자산인수펀드 등에 대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투자회수시장 조성 추진

* 현재 민관합동으로 1,300억원의 세컨더리 펀드를 결성하였고, 구주의 매입가격이 액면가액의 1/3이라고 할 경우 4,000억원의 구주인수가 가능

○ 벤처투자 회수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주(舊株) 거래정보망 구축·운영(중기청)

□ 투자기업의 기업가치제고를 통한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 촉진을 위해 일시적인 경영지배목적 투자 허용(창업지원법시행규칙)

<향후 추진계획>

◇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의 세부과제 내용,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05.1월중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

⇒ 법개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05.1/4분기에 바로 시행하고, 법개정 사항은 국회일정을 감안해 신속히 추진

참고1**벤처기업 실태조사 개요(1,000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경영상태) 현재 30.5%가 나쁘다고 답변한 반면, 내년에는 69.3%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
- ☐ (경영활동상 어려움) 개발자금 조달(15.9%), 원자재 가격 급등(16.3%), 기술인력 확보(34.7%), 금융기관 차입(10.8%)
- ☐ (벤처지원제도 개선필요) 정책자금 확대(42.7%), 신용보증 확대(24.0%), 조세지원제도 개선(12.4%)
- ☐ (코스닥시장 제도개선) 상장요건 완화(39.3%), 연기금 등 투자확대(25.4%),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16.5%)
 - (코스닥 상장요건의 벤처 특성 반영) 보통(58.0%), 잘못 반영(23.5%), 잘 반영(14.9%)
 - (코스닥 우선 퇴출 기업) 적자 기업(54.0%), 자기자본 잠식(29.7%), 매출액 부진(7.2%), 주식거래 부진(4.0%)
 - (코스닥 퇴출제도 문제점) 퇴출우려 기업에 대한 사전 예고 미흡(41.4%), 부실기업의 퇴출지연(32.0%), 획일적 퇴출(10.2%)
 - (코스닥기업의 거래소 이전) 허용하되 이전요건 강화(39.3%), 일정기간 이전 제한(28.4%), 자유롭게 허용(28.1%)
 -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 거래소와 동일한 수준(46.8%), 거래소 보다 높은 수준(10.7%), 현행 유지(35.7%)

☐ (호가중개시스템 제도 개선) 수요기반 확충(40.5%), 매매제도 개선(19.9%), 진입·퇴출요건 개선(19.0%), 세제개선(12.0%)

○ (진입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자금조달효과 미미(43%), 환금성 제약(28%), 공시의무 등 관리비용 부담(8.6%)

○ (투자자금 회수 방안 마련시 진입) 예(55.4%), 아니오(38.4%)

☐ (신용보증기관 이용시 애로) 매출액 위주의 보증액 산정(46.1%), 보증한도가 낮음(13.9%), 과도한 연대보증(9.6%)

☐ (보증지원시 대주주 등의 연대 입보) 필요성은 인정되나 범위 축소 필요(50.6%), 폐지할 필요(34.1%)

○ (축소 범위)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57.2%),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외에 과점주주는 선택(23.6%)

☐ (폐자부활시스템) 필요(80.4%), 바람직하지 않음(16.7%)

○ (지원프로그램) 재기자금 등 직접지원(49.0%), 컨설팅 등 간접지원(21.5%), 신용불량정보 해제(26.7%)

○ (폐자부활시 보완장치) 보증기관 및 대출기관의 정기적인 사후관리(35.4%), 외부 회계감사(27.1%), 경영정보 공시(23.5%)

☐ (필요한 조세지원) 개인주주의 배당소득 인하(45.4%), 비과세 증권저축 도입(21.6%), 기관투자자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확대(10.0%)

참고2

벤처기업에 대한 현행 지원제도 개요

구 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창업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2천만원 이상 *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처육성특별법 제10조의2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 16조의 2
	산재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육성특별법 제6조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벤처육성특별법 제18조의 2
	창업자금지원	◦ 창업3년미만(예비창업자포함) 기업의 자금 융자('04년: 3,600억원)	
창업 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21조
성장 금융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이익율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유가증권협회등록 규정(증권업협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부채비율적용면제, 가점 등)	중진공 규정 (융자사업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간이심사대상 확대 등)	신보 및 기술신보 규정(보증심사부서)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7조

구 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인력	스톡옵션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 50%까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 한도)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2회 부여 * 일반기업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	해외진출 지원	-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박람회·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 미국 SBIR 진출지원 (법률컨설팅, 법인설립비 등)	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과)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판로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내부지침 (한국방송광고공사, 영업1국)
기타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가 300인까지 가능 *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육성특별법 제16조의 5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부분적 주식교환의 경우) *상법은 포괄적인 주식교환만 가능	벤처육성특별법 제15조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 제280조

참고3

외국의 벤처정책 사례

미국	· “활력있는 다수(the vital majority)”를 유지 - 창업 등 리스크가 큰 분야는 “투자”를 통해 지원 (미국 중소기업청은 SBIC(공공벤처캐피탈) 442개를 인가하고 펀드출자 및 보증을 통해 투자 촉진 ('04) : 70억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R&D비용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할당(SBIR)
일본	· 70년대부터 벤처정책을 시도 - R&D비용이 높고(3% 이상), 창업 5년 이내기업을 하이테크 기업으로 규정하고 규제완화 등 지원(예: 100엔 주식회사) -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신용보증특례 - 개인(엔젤)이 특정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
대만	· 첨단 신산업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육성 - '83년 이후 45개의 “민간벤처캐피탈”과 2개의 “공동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10억불 규모 벤처캐피탈이 창업투자지원 - 23~40세 청년사업가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제도” 실시 - 신축과학공업원구를 설치하여 클러스터 형성 유도
이스라엘	· 정부 중심으로 소수정예기업을 선정하여 BI 입주, 자금 지원(초기 Yozma펀드, 미국내 유태계 펀드) 집중 육성
EU	· 벤처기업 정책방향 - 대출 및 모험자본조달의 용이화 - 중소기업의 급성장을 위해 자본시장(EASDAQ)의 발전 및 개선 - 팩토링·신용보험 등 중소기업에 위한 특수금융상품 발굴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잠재력 증대 및 신시장 진출 촉진

참고4

외국의 주요 벤처관련 자본시장 현황

□ NASDAQ(미국)

- '71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전자증권시장으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굴지의 기업이 상장

- * NYSE보다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벤처기업자금조달 및 벤처캐피털의 투자회수시장의 기능을 수행

(단위 : 10억불, 백만주)

구분	등록기업수	시가총액	거래량	거래대금	주가지수
'99	4,829	5,205	388,208	10,467	4,069.31
'00	4,063	3,597	442,753	19,799	2,470.52
'01	4,109	2,740	471,217	10,935	1,950.40
'02	3,649	1,994	441,666	7,255	1,335.51
'03	3,294	2,844	-	7,068	2,003.37

□ JASDAQ(일본)

- '66년 일본 증권업협회의 OTC시장 설립이후 1983년 벤처기업 대상중심의 주식시장으로 개편

- * 98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거래소시장과 경쟁적인 시장으로 발전

(단위 : 10억엔, 백만주)

구분	등록기업수	시가총액	거래량	거래대금	주가지수
'99	868	27,411	4,142	12,194	97.28
'00	886	10,283	3,457	11,423	54.20
'01	926	8,927	3,297	5,013	47.20
'02	939	6,983	4,154	3,668	38.49
'03	943	9,385	5,625	6,346	67.51

□ AIM(영국)

- '95년 소기업 및 등록전 단계 기업을 위한 장외시장으로 개설

(단위 : 10억파운드, 백만주)

구분	등록기업수	시가총액	거래량	거래대금	주가지수
'99	347	13.5	21,259	5.4	1,932.68
'00	524	14.9	39,510	13.6	1,437.76
'01	629	11.6	28,167	4.9	897.84
'02	704	10.3	24,792	3.5	602.92
'03	754	18.4	57,662	6.6	835.40

보도참고자료 : 04.12.24일 오전 7:30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벤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

2004. 12. 23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목 차

I. 벤처에 대한 평가1

- 1. 벤처 현황1
- 2. 벤처의 우리 경제상 위치2
- 3. 벤처기업 실태조사3

II. 벤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방안6

- 1.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확립 및 활성화6
- 2. 호가중개시스템 개편을 통한 벤처자금의 선순환 유도 .10
- 3.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확대 및 제도개선11
- 4. 벤처기업 정보유통 활성화12
- 5. 벤처투자 확대 유도12
- 6. 정직한 실패에 대한 패자부활 여건 구축13

<참고> 주요 대책별 추진계획

I. 벤처에 대한 평가

1. 벤처 현황

- 벤처기업수는 '04.11월말 현재 7,433개로 01년 이후 지속 감소하였으나, 금년 4월부터 증가세로 반전

	00말	01말	02말	03말	04.2	04.4	04.11말
• 벤처기업수	8,798	11,392	8,778	7,702	7,541	7,618	7,433

* 벤처기업 : 벤처특별법에 따라 기술, 연구개발, 벤처투자 분야에서 인정

- 유형별로는 신기술기업은 증가, 벤처투자기업은 감소

	신기술기업	연구개발기업	벤처투자기업	합 계
02말	6,329(72.1)	1,325(15.1)	1,124(12.8)	8,778(100%)
04.11말	5,642(75.9)	1,359(18.3)	432(5.8)	7,433(100%)

- 최근 벤처투자 및 코스닥시장은 IT 버블 붕괴, 시장신뢰 상실 등의 영향으로 장기 침체 지속

- 01년 이후 창투조합 결성 및 신규투자 감소

	'99	'00	'01	'02	'03	'04.10
• 창투조합결성(억원)	4,885	14,341	7,910	5,222	4,550	3,104
• 신규투자(억원)	9,502	20,075	8,893	6,167	6,118	4,978

- 코스닥시장 신규등록 및 자금조달도 위축

	00	01	02	'03	'04.12.22
• 코스닥지수(P)	525.8	722.1	443.6	448.7	380.54
• 신규등록벤처(개)	117	130	105	58	31*
• 직접자금조달(조원)	6.2	3.1	1.7	1.9	1.3*

* 04.11월 기준

2. 벤처의 우리경제상 위치

□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에서 GDP 대비 3%, 총수출의 4%, 전체고용의 3%를 차지

○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및 경영성과가 우수

* 정규직 종업원 수(평균) : 02년 36.2명 → 03년 39.1명

* 매출액 증가율(03년) : 벤처기업 25.3%, 중소기업 5.4%, 대기업 6.6%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03년) : 벤처기업 8.3%, 중소기업 4.6%, 대기업 8.2%

* 수출증가율('04.1~10) : 벤처기업 38.6%, 중소기업 24.5%, 대기업 39.2%

□ 과거의 직접지원 위주의 정책 및 가치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벤처Bubble과 일부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초래

○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 상실로 이어짐

□ 그러나, 벤처기업은 IT, NT, BT 등 신기술을 산업화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과 대안을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도 여전

○ 세계화 및 중국의 부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아이디어에 근거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필수

○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혁신기술 위주의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이 중요

○ 특히,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되살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도 벤처의 활성화 필요

3. 벤처기업 실태조사(1,000개, 한국갤럽)

- ☐ (경영상태) 현재 30.5%가 나쁘다고 답변한 반면, 내년에는 69.3%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
- ☐ (경영활동상 어려움) 개발자금 조달(15.9%), 원자재 가격 급등(16.3%), 기술인력 확보(34.7%), 금융기관 차입(10.8%)
- ☐ (벤처지원제도 개선필요) 정책자금 확대(42.7%), 신용보증 확대(24.0%), 조세지원제도 개선(12.4%)
- ☐ (코스닥시장 제도개선) 상장요건 완화(39.3%), 연기금 등 투자확대(25.4%),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16.5%)
 - (코스닥 상장요건의 벤처 특성 반영) 보통(58.0%), 잘못 반영(23.5%), 잘 반영(14.9%)
 - (코스닥 우선 퇴출 기업) 적자 기업(54.0%), 자기자본 잠식(29.7%), 매출액 부진(7.2%), 주식거래 부진(4.0%)
 - (코스닥 퇴출제도 문제점) 퇴출우려 기업에 대한 사전예고 미흡(41.4%), 부실기업의 퇴출지연(32.0%), 획일적 퇴출(10.2%)
 - (코스닥기업의 거래소 이전) 허용하되 이전요건 강화(39.3%), 일정기간 이전 제한(28.4%), 자유롭게 허용(28.1%)
 -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 거래소와 동일한 수준(46.8%), 거래소 보다 높은 수준(10.7%), 현행 유지(35.7%)

☐ (호가중개시스템 제도 개선) 수요기반 확충(40.5%), 매매제도 개선(19.9%), 진입·퇴출요건 개선(19.0%), 세제개선(12.0%)

○ (진입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자금조달효과 미미(43%), 환금성 제약(28%), 공시의무 등 관리비용 부담(8.6%)

○ (투자자금 회수 방안 마련시 진입) 예(55.4%), 아니오(38.4%)

☐ (신용보증기관 이용시 애로) 매출액 위주의 보증액 산정(46.1%), 보증한도가 낮음(13.9%), 과도한 연대보증(9.6%)

☐ (보증지원시 대주주 등의 연대 입보) 필요성은 인정되나 범위 축소 필요(50.6%), 폐지할 필요(34.1%)

○ (축소 범위)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57.2%),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외에 과점주주는 선택(23.6%)

☐ (폐자부활시스템) 필요(80.4%), 바람직하지 않음(16.7%)

○ (지원프로그램) 재기자금 등 직접지원(49.0%), 컨설팅 등 간접지원(21.5%), 신용불량정보 해제(26.7%)

○ (폐자부활시 보완장치) 보증기관 및 대출기관의 정기적인 사후관리(35.4%), 외부 회계감사(27.1%), 경영정보 공시(23.5%)

☐ (필요한 조세지원) 개인주주의 배당소득 인하(45.4%), 비과세 증권저축 도입(21.6%), 기관투자자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확대(10.0%)

II. 벤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방안

◇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5년이 『벤처 활성화 원년』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

○ 多産多死, 신기술과 창업, 고위험·고수익, 역동성 등 벤처의 本質이 발휘되도록 시장 육성, 투자 및 보증 확대, 정보유통, 세제지원 등을 통해 벤처 생태계를 조성

- ▶ 코스닥과 거래소를 차별화된 시장으로 육성하고, 미래의 성장성 있는 벤처기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부실 기업을 신속히 퇴출
- ▶ 비상장 벤처 기업의 자금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을 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중개 시스템으로 개편
- ▶ 벤처기업의 신기술, 창업, 벤처투자 보증을 확대하고, 연대입보 등 보증제도를 개선
- ▶ 벤처기업의 경영 정보 수집, 공시, 평가, 활용 등을 위한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 유통을 촉진
- ▶ 고위험-고수익에 적합한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투자펀드 조성을 유도하고, 세제지원도 병행
- ▶ 정직한 실패에 대한 패자부활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술과 경험 축적을 통한 벤처의 역동성을 유지

1. 코스닥시장의 차별화 및 활성화

① 코스닥을 차별화된 신시장으로 육성

□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상장요건 등에 있어 차별성이 불명확하고 신시장인 코스닥의 정체성이 퇴색

⇒ 투자자 참여가 부진하고 시장활력이 저하

□ 통합거래소 출범에 맞춰 시장간 차별화를 추진

○ 거래소는 대형 기업 중심으로 상장토록 하여 “일반기업” 위주로 육성

○ 코스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단순화하여 “중소·벤처 기업” 위주로 육성

- 벤처기업은 수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코스닥 위원회가 기술력, 성장성 등을 판단하여 상장 가능토록 개선

* 나스닥 등 대부분 신시장은 이익 요건이 없거나, 여타 요건과 선택 적용

< 현행 거래소·코스닥 상장요건 비교 >

		코스닥			거래소	
		일반(중소)	중견	벤처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	자본금	10억	-	5억	50억	30억
	자기자본	-	100억	-	100억	75억
	자산총계	-	500억	-	-	-
	매출액	-	-	-	최근300억 (3년평균 200억)	최근150억 (3년평균 100억) & 최근성장률 20%
안정성	자본잠식	없을것	없을것	없을것	유보율* 50%	유보율* 50%
	부채비율**	1.5배	1.0배	-	1.5배	1.5배
수익성	경상이익	있을것	-	있을것	영업/경상/당기순이익	영업/경상/당기순이익
	ROE***	10%	-	5%	5%(&3년 10%) or 이익 25억(&3년 50억)	10% or 이익 20억
기타		주식양도 제한여부, 주식분산 정도, 소송 및 부도 여부 등				

* (자기자본 - 자본금)/자본금×100, **동종업종 기준, ***자기자본이익률=이익/자기자본×100

②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

□ 코스닥 시장은 00년 이후 시장 건전화 차원에서 퇴출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

* 관리종목 지정기업 등이 90개에 달하여 향후 퇴출이 증가할 전망

○ 그러나, 관리종목 등 퇴출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이 장기간 시장에 존속함에 따라 시장 건전화에 장애

□ 앞으로 한계선상에 있는 부실기업이 신속히 퇴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확대하여 투자자에 대한 사전경고 기능을 강화

* (현행) 연간 결산시 50% 이상 자본잠식 →
(개선) 추가로 반기 100% 이상 자본잠식 등

○ 관리종목 지정 후 퇴출까지의 유예기간을 단축

* (현행) 50%이상 자본잠식의 경우 1년 → (개선) 6월

○ 코스닥위원회(코스닥시장의 상장위원회)가 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출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집행

*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 증권범죄로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코스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퇴출

③ 거래 활성화 및 수요기반 확충

□ 코스닥시장의 역동성 제고

- 가격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가격변동폭을 확대
 - * (현행) 증가대비±12% → (개선) 증가대비±15%(거래소와 동일)
- 우량종목(30개)으로 구성된 STAR지수 선물을 상장(05.1/4)하고, 다양한 투자관련 지수(BT, ET 등)를 개발
- 거래대상 유가증권을 현행 주식에서 거래소에 준하여 코스닥기업 회사채,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확대
- 코스닥 공모주의 고수익펀드 배정을 중단(05.1/4)하여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기반 확충
 - * 현행 : 우리사주 20%, 고수익 30%, 일반 20%이상, 기관 30% 미만

□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코스닥기업이 비상장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받는 심사제도를 탄력 운용하여 소규모 기업 합병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
- 상장기업과의 주식교환(현물출자)시 법원의 검사인 선임 절차를 배제(양도차익 과세도 처분시까지 지연)
 - *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의 검사인 선임 절차를 기배제

□ 기업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 최대주주 등의 상장후 매각제한(lock-up) 기간을 단축
 - * (현행) 2년(1년 경과시 매월 5%) → (개선) 1년(6월 경과시 매월 5%)
- 코스닥 상장 후 무상증자 제한 폐지
 - * (현행) 상장후 1년간 이익배당 한도 내에서만 무상증자 가능
- 상장을 주선했던 증권사의 주선회업 주식 보유의무를 폐지 등
 - * (현행) 상장 주선 주식총수의 1% 또는 1천만원중 적은 금액

□ 코스닥상장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
 - 코스닥상장법인의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소득금액의 30%)을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
 - 향후 손실발생시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은 일정기간(상장후 5년) 경과후 순차적으로 환입
- 보유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코스닥상장 기업의 경우 시장규모를 감안하여 조정
 - * (현행) 발행주식 총수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소유 → (변경) 발행주식 총수 5%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소유

	평균자본금	평균시가총액	3%취득 금액
코스닥(억원)	149	345	10
거래소(억원)	1,012	4,607	138

* 04.10.15일 기준

2.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개편을 통한 벤처자금의 선순환 유도

- 호가중개시스템은 '00.3월 증권업협회가 개설하였으나, 상대매매 방식에 따른 불편, 세제혜택 부재 등으로 기업 및 투자자 참여 부진

< 호가중개시스템 중개 현황 >

구분	'00	'01	'02	'03	'04.11
일평균거래량(천주)	571	849	781	254	55
일평균거래대금(억원)	6.7	3.4	2.4	0.7	0.4
지정기업수(개)	132	176	183	107	70
유상증자실적(억원)	680	921	273	300	135

- 호가중개시스템을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 등 벤처자금의 선순환의 장으로 육성

- 현재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인 기업으로 국한되어 있는 대상기업을 “벤처기업, 정규시장 퇴출기업”으로 확대
- 매매체결방식을 시장참여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 제한적인 경쟁매매 방식 도입 등 검토

- 거래대상 중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비과세 추진
- 증권업협회 중심의 자율적인 감시 시스템을 도입
- 비상장 모험투자 중개라는 취지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여 선정

3.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확대 및 제도개선

□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벤처보증 전담기관으로 하여 3년간 (05~07년)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

- 보증지원 방식을 매출액 등 과거실적 심사 중심에서 미래가치 중심의 기술평가로 전환

(단위 : 억원)

	04년	05년	06년	07년	05~07년
기보 벤처 보증	22,200	28,000	35,000	40,000	102,500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보증)과 투자 복합상품을 통해 금융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
- 「연기금, 금융기관,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공이익은 투자자와 보증기관이 공유*

* 예 : 코스닥 상장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공유

□ 지분분산(30%)과 기술력·신용도가 양호한 벤처기업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조건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

- 지분분산은 미흡하나 기술력·신용도가 양호한 경우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만 입보

현 행	개 선	
· 대표자(전문경영인 제외) 및 경영 실권자 · 과점주주인 이사 ·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자 · 50% 이상의 최대주주	· 지분분산 및 기술·신용 양호	·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 ※ 외부감사 조건
	· 지분분산 미흡 · 기술·신용 양호	·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 입보
	· 신용 미달	· 현행기준 적용

4. 벤처기업 정보유통 활성화

☐ 벤처 기업의 영업, 재무, 기술 등 경영정보 공시를 확대하여 신뢰성 있는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경영을 유도

○ 「정보수집」 : 기보가 보증 공급시 벤처기업과 협약

* 거래중인 4,800개 벤처기업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점차 확대

○ 「정보공시·부가서비스」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기보)

- 벤처기업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사례 제공
- 자가경영진단서비스 및 외부컨설팅과 연결
- M&A 및 기술거래 관련 정보 제공
- 기관투자자간 벤처기업 주식·사채(CB, BW) 거래 중개

○ 「정보 가공·평가」 : 중소기업 전문 기업CB와 연계

5. 벤처투자 확대 유도

☐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과 민간 공동 펀드 조성(05년중 2천억원)

☐ 기업은행이 중소·벤처기업 전용 PEF 조성(05년중 2천억원)

☐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벤처투자에 대한 평가를 중장기로 유도하고, 감독·감사시 이를 감안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6. 정직한 실패에 대한 패자부활 여건 조성

□ 벤처기업은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97년 벤처 특별법 제정 이후 약 1만개 실패기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대표이사와 대주주는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이 사장

□ 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통해 재기가 가능하도록 패자부활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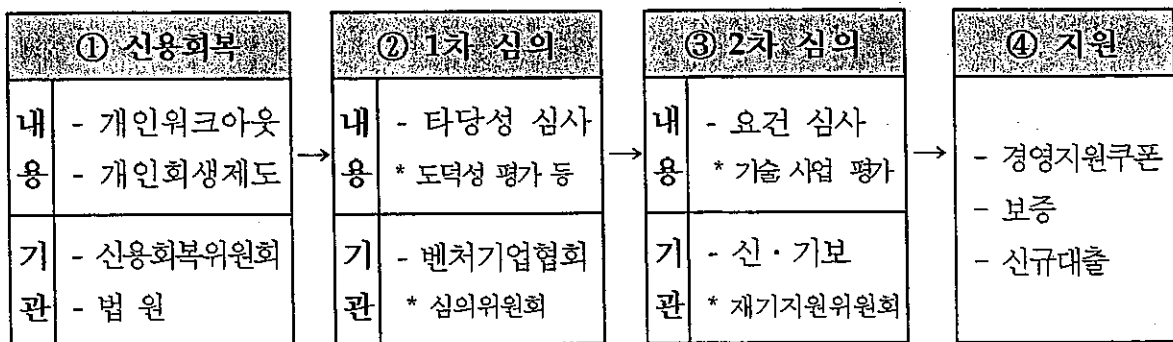
○ 대상은 벤처기업 경영인으로 하되 과거 보증경력이 없이 실패한 경우 외에 보증을 받아 실패한 경우까지 포함

○ 신용회복자에 한해 벤처기업협회가 1차로 도덕성을 평가하고 보증기관이 기술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신규보증

- 과거 보증으로 인한 구상권은 상호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행사 유예

* 다만, 과거 보증경력이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해 3년 경과시 가능

⇒ 세부기준은 보증기관에서 별도 마련



<참고> 주요 대책별 추진계획

내용	필요조치	추진시기	추진기관
① 코스닥·거래소 차별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05.1/4	통합 거래소 * 금감위 승인 (재정부 사전협의)
② 코스닥 퇴출제도 개선	"	"	"
③ 코스닥 가격변동폭 확대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	"	"
④ STAR지수 선물 상장	"	"	통합 거래소
⑤ 코스닥기업 회사채, CB, BW 상장	증권거래법 시행령, 상장규정 개정	"	재정부
⑥ 공모주 배정 개선	증권업협회 규정 개정	"	증권업협회
⑦ 코스닥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심사 요건 완화	증권거래법 시행령, 상장규정 개정	"	재정부 통합거래소
⑧ 상장기업 합병절차 개선	증권거래법	05.상반	재정부
⑨ 코스닥 규제 정비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05.1/4	통합 거래소
⑩ 호가중개시스템 개편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업감독규정 및 증권업 협회 규정 개정	"	재정부, 금감위 증권업협회
⑪ 벤처기업 보증확대 및 개선	운용계획 반영 및 업무 규정 개정	"	기보, 신보, 산은, 기은
⑫ 벤처기업 정보유통 활성화	"	"	"
⑬ 벤처투자확대	자체 집행	05년중	산은, 기은
⑭ 패자부활여건 조성	업무규정 개정	05.1/4	기보, 신보

* 세제개선 내용은 05년 상반기